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0.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7년 8월 30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4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0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7년 9월 5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배상필)

가. 제정이유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의 급증에 따라 외국인 처우 및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원대상 외국인 범위 설정(안 제5조)

우리 구 거주 외국인 중 합법적 체류자로서 거주 외국인, 우리나라 국적 취득 3년 미만자, 기타 한국어 등 우리 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 등

○ 지원사업 선정(안 제6조)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소양 또는 전문교육, 보육, 고충처리 인권 옹호 등

○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관계기관 및 전문가) 구성 : 11인 이내
(안 제8조)

○ 거주외국인 복지관 설치 운영 : 비영리, 위탁운영 가능(안 제13조)

○ “세계인의 날” 지정(매년 5월20일), 세계인 주간 설정 및 행사추진
(안 제18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옥)

- 본 조례는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이 2006년 11월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어 통일된 규정을 확보하게 되었고, 상위법인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에,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7월 18일에 제정되어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법적인 타당성이 인정됨.
- 2007년 5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만 7천명, 그중 영등포구가 2만 6천 8백 명으로, 작년 우리 구에 등록된 외국인 1만 4천 4백 명에 비해 곱절 늘어 난 숫자이며, 이는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로는 외국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적별로 보면 83%가 중국 동포인 조선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신길1동과 5동, 대림2동에 이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다 하겠음.
- 다만, 본 조례안은 '20일' 규정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킴으로써, 조례에 대한 주민참여와 주민홍보에 미흡함이 없지 않으며, 안 제5조의 지원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제외하였는바 우리 구 거주외국인 중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숫자도 많음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제정)

의안 번호	85
----------	----

제출연월일 : 2007.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 및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거주외국인의 정의**(안 제2조 제1호)
 - 우리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 **구청장 책무**(안 제4조)
 -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 사회 조기적응과 주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 추진
- **지원대상 외국인 범위 설정**(안 제5조①,②)
 - 우리구 거주 외국인중 합법적 체류자로서 거주 외국인, 우리나라 국적취득 3년미만자, 기타 한국어 등 우리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
 - 재해·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및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 **지원사업 선정**(안 제6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소양 또는 전문교육, 보육, 고충처리 인권 옹호 및 경제활동 지원 등의 생활, 법률자문, 취업상담 민원처리 안내·상담, 보건의료지원, 역사 문화제도 교류, 체육행사 개최 기타
-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 구성** : 11인이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안 제7조)

- 외국인 복지관 설치 운영 : 비영리, 위탁운영 가능(안 제13조①,②)
- “세계인의날”지정(매년 5.20일), 세계인 주간 설정 및 행사추진
(안 제18조①,②,③)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 07. 5.17, 법률제8442호)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정 07. 7.18, 대통령령제20170호)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 2007. 8.14~8.24(10일간)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해 구 의회 조기상정을 위함.
- 규제개혁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제정)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 이용)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외국인 거주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 외국인 가정
4.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6조(지원사업)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소양 또는 전문교육, 보육
2. 고충처리·인권옹호 및 생활법률, 민원처리 안내상담
3.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
4.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5. 보건의료
6. 역사 문화제도 교류·체육행사 개최
7. 기타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장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제7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교육청·경찰서·지방노동청·출입국관리사무소·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구청 공무원중 국장급이상 2명 이내
3. 거주외국인·구의원·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자 중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거주외국인 복지관 설치 운영

-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복지관은 거주외국인을 위한 교육 및 문화활동, 보건의료지원, 상담,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4조(운영)** ① 복지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복지관의 시설, 이용방법, 시간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

- 제15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거주외국인 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지원)**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지원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① 구청장은 세계인 주간(매년5월20일부터 1주일)을 맞이하여 주민과 거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학술행사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주민증서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표창수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경우
2. 외국인중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과 모범주민 표창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명예주민)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업무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주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